

공시송달 공고

아래 송달내역은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제3항,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2. 19.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장 유 정



공시송달 내역 공시송달 [2025. 02. 19. ~ 2025. 03. 05.]

- 1. 제목 : 벌과금 체납에 따른 벌과금 납부독촉서 공시
- 2. 공고기간 : 2025. 02. 19. ~ 2025. 03. 05. (15일간)
- 3. 송달내역

연번	징제번호	종류	납부의무자	미납액 (단위 : 원)	사유
1	2025-73	벌금 (즉결)	김충성	80,000	반송(폐문부재)
2	2025-74	벌금 (즉결)	김명동	70,000	반송(폐문부재)
3	2025-76	벌금 (즉결)	김보영	50,000	반송(주소불명)
4	2025-77	벌금 (즉결)	박준길	70,000	반송(폐문부재)
5	2025-78	벌금 (즉결)	조훈	100,000	회사동료 수령
6	2025-272	벌금 (즉결)	박희정	40,000	반송(폐문부재)
7	2025-297	벌금	주오환	1,500,000	반송(폐문부재)
8	2025-299	벌금	한봉길	3,000,000	반송(폐문부재)
9	2025-300	벌금	김규현	1,000,000	반송(폐문부재)
10	2025-301	벌금	구자옥	5,000,000	반송(폐문부재)

4. 문의사항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재산형집행계(054-820-4584)

5. 기타사항

벌과금 체납에 따른 벌과금 납부독촉서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위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납부기한은 벌과금 납부독촉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 날부터 15일까지입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납부기한 내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과료) 미납자인 경우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납부기한과 상관없이 지명수배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